

한 썸 천 정 비 사 업 에 따 른
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
(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)

2016. 4



예 천 군

제1장 계획의 개요

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- 본 계획은 소하천인 한샘천 정비사업으로, 소하천정비법령에 의거 소하천정비계획에 부합되도록 노후된 제방, 법면 및 하천 시설물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, 본 정비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로 계획지구 주변 영향권 지역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측, 평가, 분석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변화로 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1.2 실시근거

1.2.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계획은 「소하천정비법」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으로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[별표 2]에 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.

<표 1.2.1-1>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협의요청시기

구 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·규모	협의 요청시기
2. 개발기본계획 자. 하천의 이용 및 개발	2) 「소하천정비법」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	「소하천정비법」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 청이 지방환경관서의장과 협의하는 때

1.2.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계획은 소하천구역 내 사업면적 7,500제곱미터 이상으로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[별표 4]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.
-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[별표1]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을 포함·검토하여 향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절차가 생략되도록 할 계획임.

<표 1.2.2-1>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협의요청시기

구 분	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·규모	협의요청시기
7. 「수도법」, 하천법」, 「소하천정비법」 및 「지하수법」 적용지역	다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,500제곱미터 이상인 것	사업의 허가 전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60조

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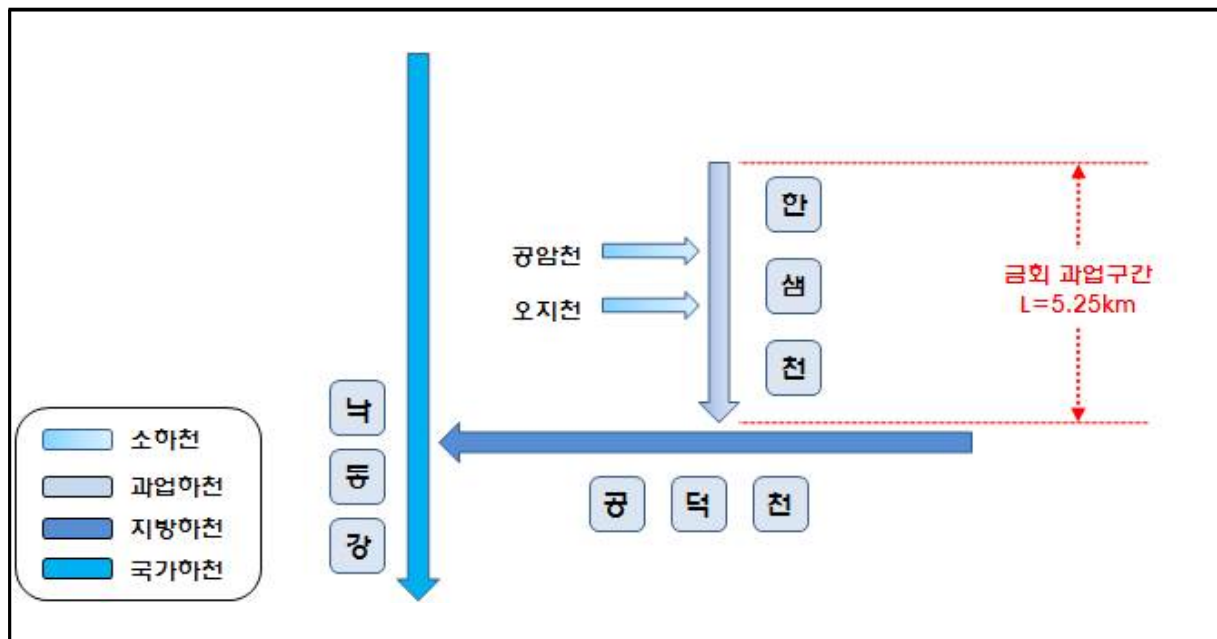
1.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: 검토한 평가항목의 작성
2.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: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

1.3 계획의 내용

- 계획명 : 한샘천 정비사업
- 위 치 :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흔효리~낙산리 일원
- 계획규모 : L=5.25km
- 계획시행자 : 예천군
- 승인 기관 : 예천군
- 계획의 개요

<표 1.4-1> 한샘천 현황

하천명	유수의 계통			하천 등급	하천의 구간		유역 면적 (km ²)	유로 연장 (km)	하천 연장 (km)
	본류	1지류	2지류		기 점	종 점			
한샘천	낙동강	공덕천	한샘천	소하천	예천군 풍양면 흔효리 (대흥지)	예천군 풍양면 낙산리 (공덕천 합류점)	11.60	6.61	5.2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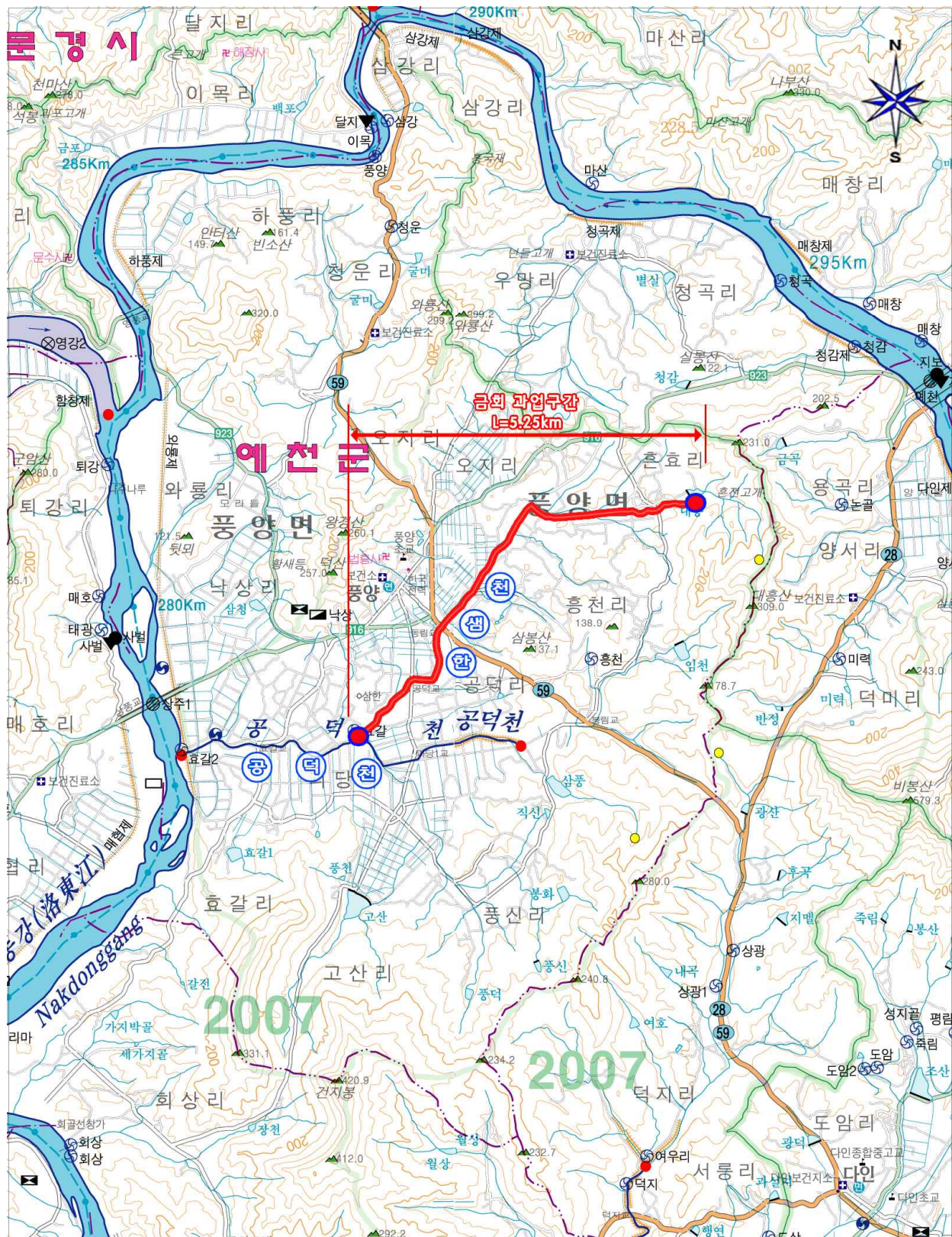


<그림 1.4-1> 계획하천 수계모식도

1.4 계획의 기대효과

- 수리·수문 특성변화와 하천의 관리운영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
- 주변 하천의 관리, 이용, 보전, 개발,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 개선 도모
- 하천의 효율적 보전가치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이·치수, 환경측면 등을 고려한 하천관리 기본방향 수립
-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하천환경 조성
- 하천변과 유역의 자연적, 사회적 특성 및 자연보전, 친수기능을 고려한 공간기능 설정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

1.5 계획하천 위치도



<그림 1.5-1> 계획지구 위치도

제2장 대상지역의 설정

2.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- 본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본 계획 및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.
- 대상지역의 설정방법은 사업특성과 입지여건 및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·분석하기 분야별로 구분하였음.

<표 2.1-1>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공간적 범위	시간적 범위	비 고
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(예천군 풍양면 흔효리~낙상리 일원)	공사시	

2.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예측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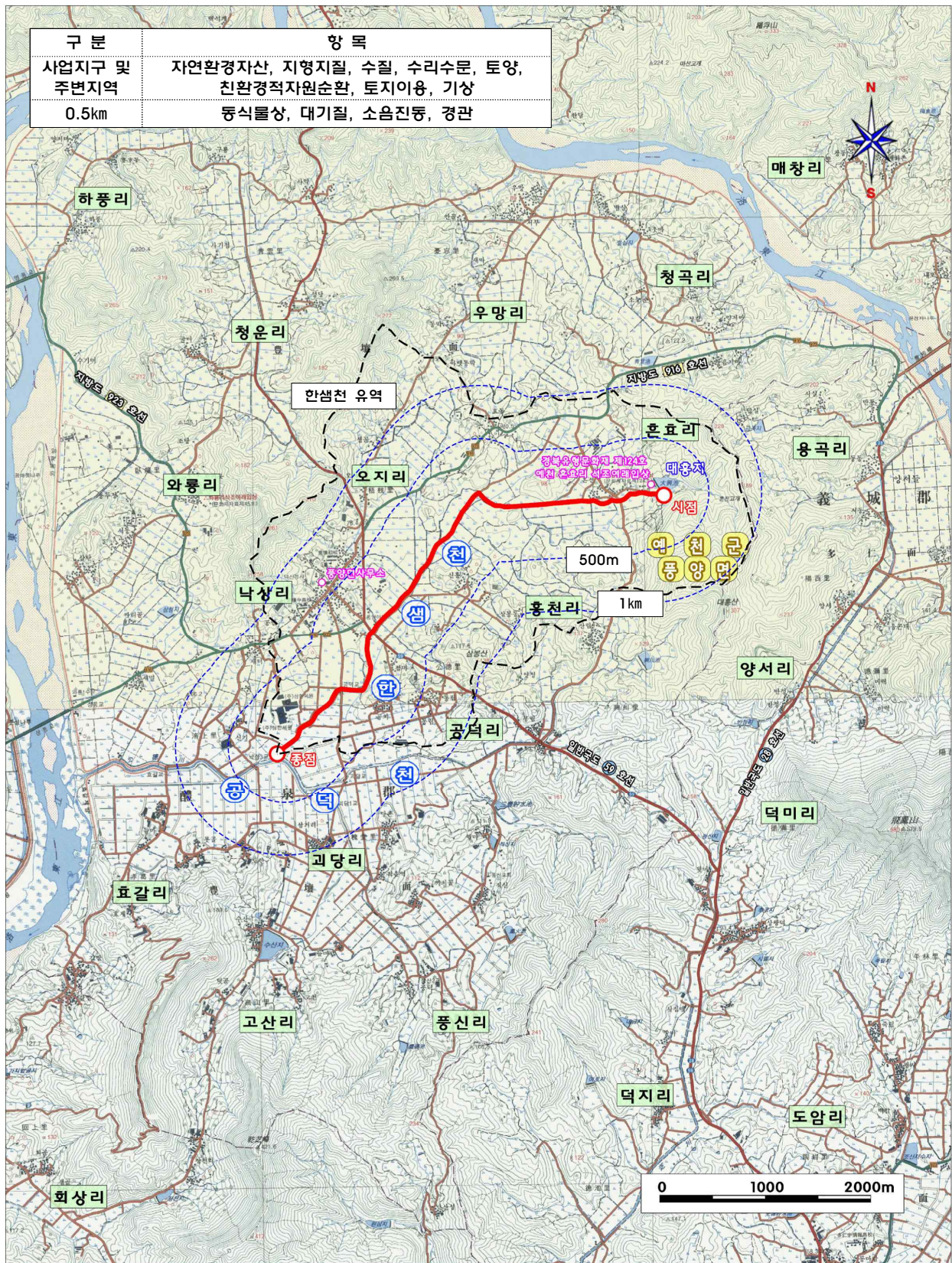
- 본 계획에 따른 환경상 영향을 예측·분석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를 설정하였음.

<표 2.2-1>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예측범위

구분		평가대상지역의 설정기준	평가대상 지역의 범위
자연환경의 보전	생물다양성·서식지보전(동·식물상)	■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천공간의 변화로 동·식물상의 서식변화 및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■ 하천자연도 상위등급 및 법정보호종 서식지 등 주요 보호 대상지역	■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(반경 500m)
	자연환경자산	■ 계획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■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
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(지형·지질)	■ 개수계획,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계획하천 내 지형 및 하천형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■ 계획하천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(경관)	■ 계획시행으로 인한 위락,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■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

<표 계속>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예측범위

구분		평가대상지역의 설정기준	평가대상 지역의 범위
자연환경의 보전	수환경의 보전(수질)	■ 공사시 토사유입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- 강우에 의한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	■ 계획하천 및 하류수계
	수환경의 보전(수리·수문)	■ 본 계획에 따른 수리·수문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■ 계획하천 및 하천유역
생활환경의 안정성	환경기준부합성 (기상)	■ 계획하천 인근의 광역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지역의 기초자료로 활용 ■ 지형·지질, 대기질, 수질의 기본요소	■ 계획하천 및 주 변지역
	환경기준부합성 (대기질)	■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날림먼지 및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■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(반경 500m)
	환경기준부합성 (소음·진동)	■ 공사시 건설장비의 투입으로 인해 인근지역에 미치는 소음·진동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■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(반경 500m)
	환경기준부합성 (토양)	■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에 의한 폐유발생 등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	■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
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■ 공사시 인부 투입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■ 공사시 장비 사용에 따른 폐유발생 및 폐기물발생 ■ 공사시 지장물 철거 등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■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■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■ 계획하천



<그림 3-1>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도

제3장 대안의 설정

3.1 대안의 설정

- 대안의 종류와 설정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고시 제2015-141호인 “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”에 의거 다음과 같이 6개 사항으로 구분하였음.

【별표 2】

정책계획(개발기본계획)대안 및 입지 대안 관련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작성방법
(영 제23조 관련)

1.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

- 가. 전략환경평가에서의 “대안”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, 환경적 목표와 기준, 추진전략과 방법, 수요와 공급, 위치와 시기,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.
- 나. 정책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. 이 경우 당해 정책계획의 내용과 연동되는 타 계획도 함께 연계하여 검토한다.
- 다 .구체적인 입지가 예정된 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·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한다.

대안종류	선정 방법	선정
계획비교	◦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(No action)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	○
수단·방법	◦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	○
수요·공급	◦ 개발에 관한 수요·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·공급량(규모)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	-
입 지	◦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	-
시기·순서	◦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(예 : 연차별 개발)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	-
기 타	◦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	-

3.2 대안별 비교검토

- 본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(No Action)와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(Action)인 계획비교 대안과 수단·방법 대안검토 등 총 2개 대안을 선정하여 대안별 비교검토를 하였음.

3.2.1 계획비교 대안검토

- 계획 수립시와 계획 미수립시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였으며, 대안별 비교 검토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.

<표 3.2.1-1>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·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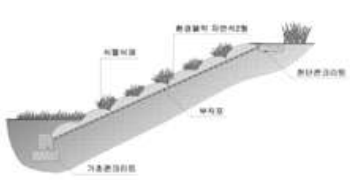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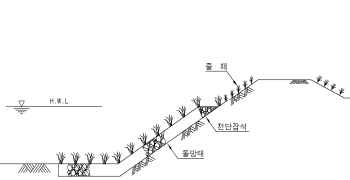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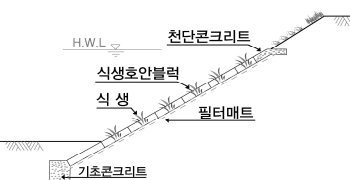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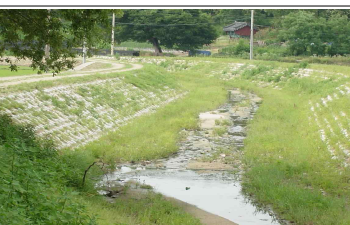
구분	대안1안 : 계획수립시 (action)	대안2안 : 계획 미수립시 (No action)
계획비교	◦ 소하천정비종합계획상의 개수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개수계획으로 수자원 이용 효율성 증대 ◦ 하천 개수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 지형훼손 및 식생 훼손이 예상되나 하천 정비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◦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 예상 ◦ 하천정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생활환경 증진 예상	◦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지 10년이상된 하천으로 비효율적인 수자원 이용 ◦ 지형변화 및 생태계 변화는 없으나, 홍수시 하천훼손 및 범람 등으로 재해피해 우려 ◦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효율성 저하 (토지이용계획상 변화 없음) ◦ 생활환경의 변화 없음
선정	○	

3.2.2 수단·방법 대안검토

가. 호안공법 비교 검토

- 본 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하천정비시 적용사례가 많은 호안공법들을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·검토하였으며, 시공성, 경제성,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식생호안블록, 식생옹벽블럭, 식생매트 등 치수 및 친환경적인 호안설치 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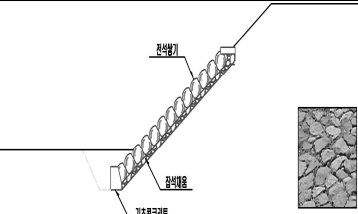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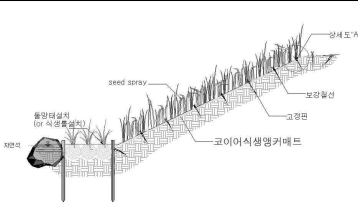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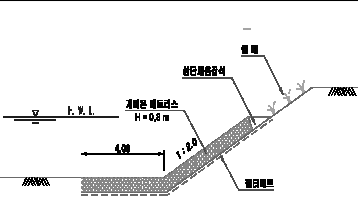
<표 3.2.2-1> 호안공법에 따른 대안별 비교·검토

구분	생태블록	돌망태	식생 호안블럭
단면			
시공 전경			
장점	◦ 장비시공으로 인해 공기가 빠르고 현장관리가 용이하여 시공성이 양호함. ◦ 블럭간 고리연결로 보수성이 양호. ◦ 블럭간 간극 및 유공을 이용한 부분녹화가 가능함. ◦ 자연석 문양과 부분녹화에 따른 식생활착 조합. ◦ 시공후 식생이 활착하면 경관 양호	◦ 굴요성이 뛰어나 안정성 양호 ◦ 세굴에 대한 포락의 우려가 적음 ◦ 기성제품의 사용으로 시공성 양호	◦ 식생공간이 넓어 초화류번식 경로 제공 ◦ 수변식물류 서식처제공 및 생태환경복원 ◦ 지그재그시공형식으로 사면안정성 우수 ◦ 기계화 시공으로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
단점	◦ 자연석 문양의 일관성으로 식생이 활착전에는 인위적인 측면이 있음. ◦ 공사비가 다소 고가임.	◦ 홍수시 이물질이 걸려 미관저해 가능성 있음	◦ 곡선구간 정밀시공 요구 ◦ 초기 식생관리 필요
선정			○

<표 계속> 호안공법에 따른 대안별 비교·검토

구분	스톤네트	자연석쌓기	식생옹벽블럭
단면			
시공 전경			
장점	◦ 자연석 철망과 일체화 되어 치수안정성 우수 ◦ 자연석과 수변식물이 어우러져 동식물 서식처 제공 ◦ 역간 접촉산화법에 의한 하천의 자정기능 향상 ◦ 철망의 유연성, 굴요성으로 시공성이 우수 ◦ 식생이 활착된 후에는 반영구적임 ◦ 추이대 식생활착 용이함	◦ 내구성이 뛰어나 반영구적 ◦ 외관이 자연형으로 경관이 좋음 ◦ 자연석에 의한 하안부 및 하상부 보호기능 ◦ 자연석을 데쌓기하여 틈이 많아 어류나 수생곤충의 흡족한 생식장 및 피난처 제공	◦ 기 시공제품으로 구조적 안정성 검증 확보 ◦ 시공후 초화류 식재로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검증 ◦ 유속에 강하고 어류의 휴식 및 서식처 제공 ◦ 기존옹벽의 제반결점을 해결하고 시공성이 뛰어난 조립식 환경생태옹벽으로 시공비 절감
단점	◦ 1:1.5경사에 적합한 제품 ◦ 콘크리트 호안블럭보다는 단기적으로 다소 고가임(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.)	◦ 쌓기에 있어 숙련공이 필요 ◦ 공사비 고가, 공사기간 다소 김 ◦ 재료의 수급 용이하지 못함 ◦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어려움	◦ 단기적으로 식생이 활착되지 않음 ◦ 곡선부 시공시 불안전 결속 ◦ 자재비가 비쌈
선정			○

<표 계속> 호안공법에 따른 대안별 비교·검토

구분	돌쌓임	식생매트	게비온 매트리스
단면			
시공 전경			
장점	◦ 자연형 소재를 사용하여 미관이 양호 ◦ 강도가 높고 법면의 보호능력이 뛰어나 수충부 및 급규부에 적용가능 ◦ 반영구적으로 유지관리가 거의 불필요	◦ 비탈면과 부착성 우수 ◦ 균일한 품질 식생 활착 ◦ 기초공 불필요 ◦ 자연 생태적 친환경 공법임 ◦ 운반, 설치 시공이 간편함	◦ 재료구입 및 시공이 용이. ◦ 굴요성이 좋아 비탈면 안정성 확보 가능함. ◦ 복도후 식재가 가능하여 친환경적임. ◦ 시공실적이 많다.
단점	◦ 타공법에 비하여 시공이 다소 복잡 ◦ 생태성(식생) 양호	◦ 녹화가 완료되기까지 우수 등에 의해 법면유실과 발아율이 저하. ◦ 불럭,돌망태와 같은 타공법에 비해 안정성 부족. ◦ 급구배 사면의 시공이 어려움.	◦ 석산등 재료가 필요 ◦ 일정규격의 망태돌이 필요
선정		○	

제4장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

4.1 검토항목

4.1.1 검토항목의 설정

-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으며,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악영향이 미미한 평가항목은 제외하였음.
-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.

<표 4.1.1-1> 중점검토 항목 설정

검토항목		선 정 사 유		검 토 사 항	시간적 범위
		방 법	공간적 범위		
자연 환경의 보전	동·식물상	◦ 현지 및 문헌조사 ◦ 생태영향범위 파악	계획하천 일원	■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 현황 및 동·식물상의 변화 파악	공사시
	자연환경 자산	◦ 현지 및 문헌조사 ◦ 영향범위 파악	계획하천 일원	■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자산 현황	공사시
	지형·지질	◦ 현지 및 문헌조사 ◦ 계획내용분석	계획하천 일원	■ 지형·지질 현황조사 ■ 공사시 절·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및 토 사유출, 사면발생	공사시
	경관	◦ 경관시뮬레이션을 통 한 경관변화 예측	계획하천 일원	■ 계획시행으로 경관의 변화	공사시
	수질	◦ 현지 및 문헌조사 ◦ 합리식	계획하천 일원	■ 공사시 절·성토에 의한 토사발생 ■ 현장인력에 의한 오수 및 분뇨발생	공사시
	수리·수문	◦ 하천정비에 따른 홍수 위 등의 변화	계획하천 일원	■ 공사시 수리·수문의 변화	공사시
생활 환경의 안정성	대기질	◦ 현지 및 문헌조사 ◦ 대기질모델활용	계획하천 일원	■ 계획하천 인근 대기질 현황 조사 ■ 공사시 대기질 영향 예측	공사시
	소음·진동	◦ 현지조사 ◦ 공사시 영향예상지역 예측	계획하천 일원	■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소음·진동 현황조사	공사시
	토양	◦ 현지 및 문헌조사	계획하천 일원	■ 계획하천 인근 토양 현황 조사	공사시
	친환경적 자원순환	◦ 현지 및 문헌조사 ◦ 원단위 적용	계획하천 일원	■ 공사시 인부 투입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■ 공사시 장비 사용에 따른 폐유발생 및 임목폐기물 발생	공사시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토지이용	◦ 현지 및 문헌조사 ◦ 계획내용분석	계획하천 일원	■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변화	공사시

<표 4.1.1-2> 일반검토 항목 설정

검토항목		선 정 사 유		검 토 사 항	시간적 범위
		방 법	공간적 범위		
생활 환경의 안정성	기상	◦ 기상자료 분석	계획하천 일원	■ 지형·지질, 대기질, 수질의 기본요소 ■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	-

<표 4.1.1-3> 제외 항목 설정

제외항목	제외사유	검토사항
온실가스	◦ 온실가스에 관계된 시설물의 설치가 없는 사업	◦ 환경영향저감방안 불필요
악취	◦ 악취에 관계된 시설물의 설치가 없는 사업	◦ 환경영향저감방안 불필요
해양환경	◦ 해양환경과 관계된 시설물의 설치가 없는 사업	◦ 환경영향저감방안 불필요
위생· 공중보건	◦ 위생·공중보건의 없는 사업	◦ 환경영향저감방안 불필요
전파장애	◦ 장애물에 의한 전파의 차폐장애와 반사장애가 없는 사업	◦ 환경영향저감방안 불필요
일조장애	◦ 주거지역의 일조에 영향이 없는 사업	◦ 환경영향저감방안 불필요
인구	◦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사업	◦ 환경영향저감방안 불필요
주거	◦ 주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사업	◦ 환경영향저감방안 불필요
산업	◦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사업	◦ 환경영향저감방안 불필요

4.2 환경영향평가 예측 및 분석에 관한 내용

- 본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된 환경영향의 예측·분석에 사용된 예측기법, 내용, 관련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.

<표 4.2-1> 환경영향 예측·분석기법

구 분		예측·분석기법	관련자료
자연 환경의 보전	동·식물상	◦ 본 계획시행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동·식물상 변화정도를 현지조사를 통해 분석	◦ 현지 및 문헌, 탐문조사 ◦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◦ 국토환경지도
	자연환경자산	◦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자료를 이용한 자연환경자산의 현황 및 영향예측	◦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자료
	지형·지질	◦ 계획하천의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한 지형변화 파악	◦ 지형도 및 지질도 ◦ 실시설계자료
	경관	◦ 계획에 따른 경관 변화 분석 ◦ 기존자료 조사 분석 및 현지조사	◦ 주변지형분석 ◦ 조망점 분석
	수질	◦ 수질현황조사 ◦ 공사시 토사유출 및 투입인력으로 인한 인근 하천에 미치는 영향	◦ 수질 현황 측정자료 ◦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, 2014 ◦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, 환경부고시 제 2015-133호
	수리·수문	◦ 계획하천의 홍수량 변화 및 수위변화 ◦ 홍수시 계획하천 영향	◦ 기존자료 조사 ◦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
생활 환경의 안정성	기상	◦ 계획하천 인근 지역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	◦ 문경기상관측소 기상자료 (2004~2013년)
	대기질	◦ 대기질 현황분석 ◦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공작업에 따른 대기질 영향 예측	◦ 기상 기초자료 ◦ 대기질 현황 측정자료 ◦ 대기확산모델(AERMOD)
	소음·진동	◦ 소음·진동 현황조사 ◦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 및 진동도 영향 예측	◦ 소음진동 현황 측정자료 ◦ 점음원거리감쇠식, 합성소음도산출식, 진동거리감쇠식
	토양	◦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토양현황조사·분석	◦ 토양 현황 및 문헌조사 자료
	친환경적 자원순환	◦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성상별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처리대책 수립	◦ 예천군 통계연보, 2014 ◦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, 2014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토지이용	◦ 계획하천의 사업계획 검토	◦ 실시설계 자료 ◦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

제5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계획

5.1 주민의견수렴 계획

5.1.1 주민의견수렴 개요

가.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-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상 본 계획에 대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예천군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할 계획임.

환경영향평가법

제11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

-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이 장에서 "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"이라한다)을 결정하여야 한다.
 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
 2. 토지이용구상안
 3. 대안
 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-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1. 해당 계획의 성격
 2.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
 3.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,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
 4. 계절적 특성 변화(환경적·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)
 5.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

-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제10조(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)

-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(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,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(이하 "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"이라 한다)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
-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(이하 "정책계획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,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나.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고·공람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

- 본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초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, 관할 행정기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.
- 또한,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기간 중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, 본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임.

환경영향평가법

제13조(주민 등의 의견 수렴)

-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**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·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**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-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.
-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·공람,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,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제13조(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·공람 등)

-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(이하 "일간신문"이라 한다)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(이하 "지역신문"이라 한다)

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,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주민(이하 이 장에서 "주민"이라 한다)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휴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1. 개발기본계획의 개요

2.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

3.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(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)의 제출시기 및 방법

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.

1.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·군·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: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

2.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: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

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, 공람장소는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5조(설명회의 개최)

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·군·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·군·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.

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,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

6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개요

- 실시근거 :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(환경영향평가협의회) 및 동법 시행령 제4조(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)
- 운영기간 : 2015. 12. 30 ~ 2016. 1. 29
- 심의방법 : 서면 심의
- 심의위원 : 7인

<표 6.1-1>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위원장	예천군	안전재난과장	최○○	계획 수립기관
위 원	예천군	안전재난과 하천담당	황○○	계획 수립기관
위 원	대구지방환경청	환경평가과장	이○○	협의기관
위 원	계명대학교	환경계획과 교수	노○○	관련 전문가
위 원	예천군	환경관리과장	윤○○	지자체
위 원	예천군	주민대표(낙상2리)	강○○	주민대표
위 원	예천군	주민대표(흔효1리)	권○○	주민대표

6.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

□ 예천군 안전재난과장 최○○ 위원장

구 분	검토의견	비고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의 적정성	◦ 대상지역은 본 계획으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으로 설정하여야 함	
2.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적정성	◦ 본 계획수립시 수리검토를 통해 홍수시 주변 지역 재해피해 우려가 있는 구간 등에 대하여 개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호안공법 선정시 최대한 친환경적인 공법을 선정하고, 가급적 인공적인 구조물의 설치 지양토록 하여야 함	
3. 대안설정의 적정성	◦ 의견없음	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	◦ 의견없음	
5. 기타의견	◦ 계획 수립시 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함	

□ 예천군 안전재난과 황○○ 위원

구 분	검토의견	비고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의 적정성	◦ 대상지역의 설정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	
2.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적정성	◦ 계획수립시 하천의 정비에 필요한 구간에 한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
3. 대안설정의 적정성	◦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계획비교, 수단방법 등의 대안설정은 적정함	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	◦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	
5. 기타의견	◦ 의견 없음	

□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이○○ 위원

구 분	검토의견	비고
□ 총괄의견	◦ 계획하천 주변은 대부분이 농경지인 농촌 소하천으로 인공적이고 획일적인 소하천정비계획은 지양하고, 자연친화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		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	◦ 대상지역 설정은 계획이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여야 함 -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개발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 - 지형·지질, 동·식물상, 대기질, 소음·진동, 수질, 수리·수문 등 직·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·설정 ◦ 대상지역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고, 도면에 표기 하여야 함	
2. 토지이용 구상안	◦ 제방 및 호안정비는 계획홍수위·하폭·제방높이를 검토하여 통수능력 확보에 필요한 구간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립하고, 자연하천 구간은 최대한 보전하는 등 불필요한 공사 계획은 지양하여야 함. ◦ 호안은 하천생태계 복원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식생도입에 유리한 환경친화적인 공법들을 조사·비교하여 선정하여야 함.	
3. 대안	◦ 대안 선정 시에는 재해예방 목표와 하천생태계의 보존·복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여야 함. ◦ 2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비교·검토한 후 장·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.	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	가. 평가항목 ◦ 평가항목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[별표1]에 따른 세부평가항목을 적용하여야 함 - 평가항목(11개) : 동·식물상, 자연환경자산, 수질(지하·지표), 수리·수문, 토지이용, 소음·진동, 위락·경관, 지형·지질, 대기질, 토양, 친환경적자연순환 등 - 제외항목 : 평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주변지역 여건, 주요 보호대상시설물, 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구분·선정	

구 분	검토의견	비고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	나. 평가범위·방법 등 ◦ 동·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- 법정보호종을 포함하여 야생생물 출현여부에 대한 문헌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야 함 - 자연생태환경 현지조사는 생육상태 또는 먹이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실시(겨울철새 등 동절기 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동절기 조사 가능)하고 법정보호종 등 주요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및 보전방안을 종별로 제시 - 계획구간 내 보전이 필요한 식생우수지역에 대한 현황 제시 및 보전방안을 수립하고, 생태계교란 생물(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)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하여야 함 ◦ 지형·지질 - 과거 소하천의 대부분이 석축, 콘크리트 호안으로 이루어진바 호안정비계획은 친환경적이고 야생동물의 이동도 원활하도록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호안공법 도입을 검토 - 보, 낙차공 등 하천횡단 시설물 설치 시에는 수생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방안(어도설치 등)을 강구하여 하천생태계의 단절 방지 ◦ 대기질, 소음·진동 - 평가범위는 계획지구로부터 0.5km ◦ 수질 및 수리·수문 - 하천 내 시설물은 기능을 검토하여 기능이 저하소멸된 시설물은 철거하고 신규 설치는 최소화(기존, 존치, 철거, 신설 계획 제시) - 홍수량, 홍수위, 기설제방고 등 계획구간의 수리·수문자료 상세히 제시 ◦ 경관 - 평가범위는 대상지 주변에서 부지가 보이는 범위(근경·중경·원경) 및 계획지구에서 외부 경관자원이 조망되는 범위로 선정 - 사업시행 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훼손여부를 검토·예측하여 사업시행 전/후 경관변화를 비교 예측하여 저감방안 수립 ※ 「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」에 따라 영향분석을 면밀히 실시	

구 분	검토의견	비고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	◦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절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- 공람기간 선정 시 공·휴일은 제외하고,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충분히 홍보(공람기간 20일 이상) -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- 추가 홍보(안) : 현수막 부착,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, 마을방송 등	
6. 기타의견	◦ 각종 현황조사 자료에 대한 현행화 및 도면 등은 육안판독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- 육안판독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확대, 색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◦ 동 심의결과를 반영·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◦ 우리 청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저가발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방지하고자 평가 용역의 저가발주 여부 등을 중점검토하고 있음 - 평가서에 “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”를 첨부하여 제출 ※ 「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(환경부, '12.10월)」 참조	

□ 계명대학교 교수 노○○ 위원

구 분	검토의견	비고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의 적정성	◦ 항목별 대상지역이 적절하게 설정됨. 다만 수환경의 보전항목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하천유역을 포함하기 바람	
2. 토지이용 구상안에 대한 적정성	◦ 본 사업의 토지이용구상안에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함	
3. 대안설정의 적절성	◦ 호안공법 등 수단·방법에 따른 대안 비교가 충실하게 이루어짐. 선정된 호안공법을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	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	◦ 동식물상 평가방법에 있어 본 사업에 의한 하천생태계 연결성, 외래종 유입, 공사시 수생태계 악화, 목표생물종의 서식지 환경현황 및 영향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	
5. 기타의견	◦ 지역주민, 토지소유자,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길 바람	

□ 예천군 환경관리과장 윤○○ 위원

구 분	검토의견	비고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의 적정성	◦ 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	
2. 토지이용 구상안에 대한 적정성	◦ 본 계획하천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
3. 대안설정의 적절성	◦ 대안의 설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	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	◦ 자연환경, 생활환경, 사회·경제환경 등 평가준비서에서 포함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조사·예측 검토하여야 함	
5. 기타의견	◦ 의견 없음	

□ 예천군 주민대표 강○○ 위원

구 분	검토의견	비고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의 적정성	◦ 의견 없음	
2. 토지이용 구상안에 대한 적정성	◦ 지역 주민들의 하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하천의 무분별한 개발보다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	
3. 대안설정의 적절성	◦ 의견 없음	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	◦ 의견 없음	
5. 기타의견	◦ 하천 주변으로 대부분 농경지와 인접하고 있으므로 공사시 주변 농경지 경작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,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	

□ 예천군 주민대표 권○○ 위원

구 분	검토의견	비고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의 적정성	◦ 의견 없음	
2. 토지이용 구상안에 대한 적정성	◦ 계획수립시 하천의 무분별한 정비는 지양하여 주시고,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는 구간은 자연재해 등에 안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	
3. 대안설정의 적절성	◦ 대안설정은 적절함	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	◦ 의견 없음	
5. 기타의견	◦ 하천정비 공사시 주변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	